

산업안전보건 현안 사항

2009. 1. 28

산업안전보건국

1. 2009년도 업무상 사고 감소대책 수립

□ 배경 및 경과

- 재해율이 '99년부터 현재까지 0.7%대에서 정체
 - ※ 50인 미만 제조·서비스업에서 3대 재해(추락·협착·전도) 다발
- '08년부터 재해자수 감소를 위한 집중관리 대책을 추진 하였으나 제한된 예산 및 인력으로 성과달성에 한계
 - ※ 지방관서에서 재해발생 사업장 위주로 18,000개소 선정·지원
- 금년의 경우는 예산과 투입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사업추진 방식을 전면 개선하여 업무상 재해 감소대책 수립

□ 주요 내용

① 2009년 “산업재해자 1만명 감소” 목표 설정

- 과거에 발생한 산업재해 분석 및 향후 산업재해 발생 추이 전망에 근거하여 '08대비 10,000여명 감소 목표
- 이를 위해 총 **1,955.8억원** 예산을 투입, 산업재해발생 위험성이 큰 사업장 **10만200개소** 집중관리
 - ※ 클린 사업 740억, 시설용자 1,000억, 기술지원 215.8억

② 과학적 근거에 의한 집중관리 Target 선정

- 최근 5년간 재해를 면밀히 분석하여 100,200개 사업장 선정
 - ⇒ 산업재해 재발위험 사업장(과거 재해발생 업체) 3만여개소 및 잠재위험 사업장(무재해이나 위험성이 큰 업체) 7만여개소

※ Target 설정기준

- ▶ 업종 : 재해다발업종(제조 17개, 기타의사업 5개, 건설 6개 공사)
- ▶ 규모 : 제조·기타의사업 50인 미만, 건설 : 120억 미만
- ▶ 우선선정 : 재해빈도, 고령자·외국인·특수고용자·신규채용자 등 다수고용, 위험작업·재해다발기계 보유

③ 재해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패키지(Package) 방식으로 지원

- 50인 미만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기술·재정·교육·검사 등 가용수단 총 동원

※ Package 지원내용

- ▶ ① 위험성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해예방방법 종합기술지원
- ▶ ② 클린사업시설개선비용 보조 및 안전시설개선자금 융자 등 재정지원
- ▶ ③ 소규모 사업장 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장 방문 안전교육
- ▶ ④ 20인 미만 사업장 유해위험기계기구 안전검사 무료지원

- 단발성 지원방식에서 탈피하여 안전공단 및 안전관리대행기관에서 월 1회/연간 총 2~4회 기술지원

※ 기술지원 횟수별 지원내용

- ▶ 1회차 : 위험성평가(4M 기법)를 통한 재해발생 위험요인 발굴 중심으로 기술 및 교육지원
- ▶ 2회차 : 개선조치 이행 및 보완계획 수립 지원
- ▶ 3~4회차 : 개선조치 이행 확인

※ 기술지원 후 미 개선사업장 지방관서통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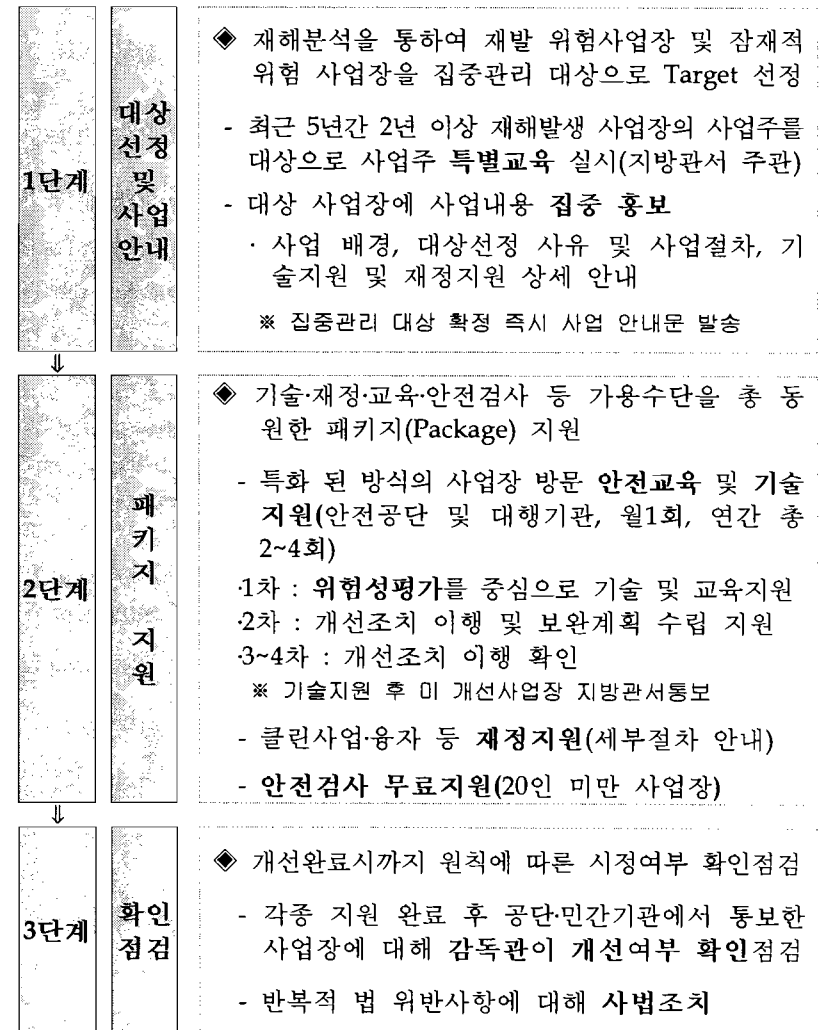
④ 개선완료시까지 원칙에 따른 시정여부 확인점검

- 각종 지원 완료 후 공단·민간기관에서 통보한 사업장에 대해 감독관이 개선여부 확인점검, 반복적 법 위반 사항에 대해 사법조치

< 참고자료 >

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집중관리

1. 사업추진 절차



2. 집중관리 대상선정

- 재해통계 분석을 통하여 “사고성 재해 재발 위험 사업장” 및 “잠재적 위험 사업장” 총 100,200개소 선정·지원
 - ※ 공단자체 : 70,200개소, 민간위탁 : 30,000개소

〈 대상 선정기준 〉

□ 1군 : 산업재해 재발위험 사업장

- 최근 5년간 재해발생 사업장 중 아래기준에 따라 선정

Target 설정				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
업종	대분류업종	중분류업종	규모	재해빈도
전 산 업	제 조 업	①선박건조수리업 ②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③제제 및 베니어판제조업 ④금속제련업 ⑤금속재료품제조업 ⑥유리제조업 ⑦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(을) ⑧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⑨요업 또는 토사석제품제조업 ⑩목제품제조업 ⑪펠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가공업 ⑫고무제품제조업 ⑬도금업 ⑭식품제조업 ⑮기계기구제조업 ⑯화학제품제조업 ⑰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을)	50 인 미 만	◆'03~'07년 까지 재해 발생 건수에 따라 선정 우선순위 부여 ①5년 연속 발생 ②4년 발생 ③3년 발생 ④2년 발생 ⑤1년 발생 ※①~⑤에 해당하는 사업장중 3대 다발 및 사고성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 최우선 선정
		①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②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③농수산물위탁판매업 ④건설기계관리사업 ⑤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		50 인 미 만

※ 제조업 17개 업종 및 기타사업 5개 업종은 전체업종 중 최근 3년간 사업장당 재해자수 발생률(재해자수/사업장수×100)을 산출하여 높은 순으로 선정

□ 2군 : 잠재적 재해발생 위험 사업장

- 최근 5년간 재해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장 및 건설업 중 아래 기준에 따라 선정

Target 설정					
1단계	2단계	3단계	4단계	5단계	
업종	대분류업종	중분류업종	규모	근로형태	위험성
전 산 업	제 조 업	①선박건조수리업 ②코크스 및 석탄가스제조업 ③제제 및 베니어판제조업 ④금속제련업 ⑤금속재료품제조업 ⑥유리제조업 ⑦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(을) ⑧비금속광물제품제조 및 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⑨요업 또는 토사석제품제조업 ⑩목제품제조업 ⑪펠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인쇄가공업 ⑫고무제품제조업 ⑬도금업 ⑭식품제조업 ⑮기계기구제조업 ⑯화학제품제조업 ⑰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을)	50 인 미 만	◆근로자 고용 형태에 따라 우선 선정 ①고령 근로자 다수 고용 ②외국인 근로자 다수 고용 ③시간제 근로자 등 특수고용 형태 근로자 고용 ④신규 채용자 다수 고용	◆사고위험 요인에 따라 우선 선정 ①사망재해 5대 위험작업 보유 사업장 ②프레스 등 유해위험기계기구 다수 보유 사업장
		①골프장 및 경마장운영업 ②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③농수산물위탁판매업 ④건설기계관리사업 ⑤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			
	건설업		①근린생활동 건축공사 ②토목공사 ③다세대 주택 공사 ④공장등 철골공사 ⑤아파트 건설 ⑥전기공사	1 2 0 억 미 만	

※ 건설업은 안전공단의 '05~'06년도 “산업재해원인조사 분석 표본조사” 결과 재해자수가 다수인 건설공사 선정

3. 집중관리 대상 선정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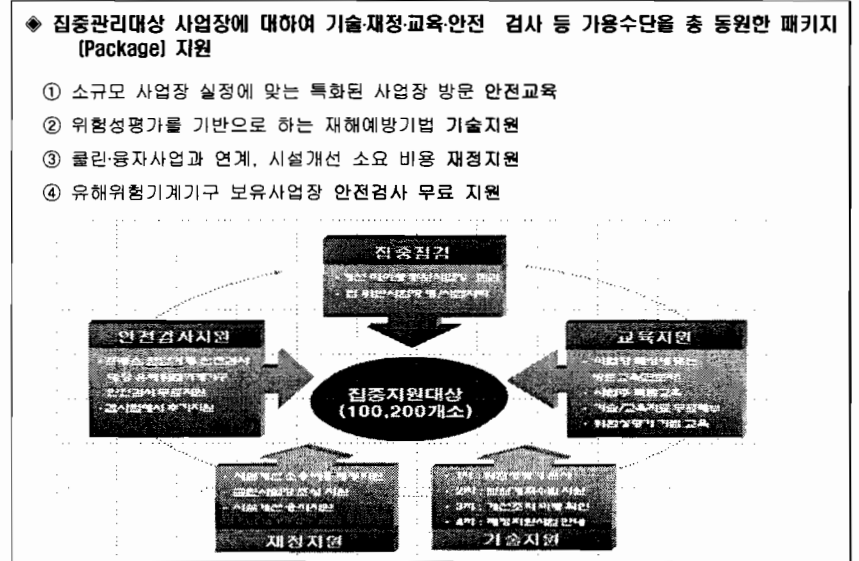
- ① '09.1월 중 본부에서 집중관리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집중관리대상 예비 사업장 명단을 작성하여 지방관서에 시달
- ② 지방관서별로 관내 사업장 실정을 고려하여 집중관리대상 선정 기준에 따라 대상선정
 - 관할 지도원 등과 협의하여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을 선정
 - 우선순위 확인을 위해 외국인·고령자·특수고용근로자5대 위험작업 보유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여 대상선정
 - 선정된 사업장 명단을 본부에 제출, 승인을 받은 후 사업시행
 - ※ 휴·폐업사업장에 대하여는 예비명단에서 추가선정
- ③ 지방관서별로 본부에서 시달한 사업장 명단 이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 수시선정

< 지역특성을 고려한 사업 예시 >

- 서울 : 건물관리업, 보건사회복지사업, 교육서비스업, 신문출판경인쇄업
- 경기 : 주물제조업, 아파트 신축공사, 시화공단
- 강원 : 임업, 경남 : 기타제조업
- 창원 : 수송용기계기구제조업(갑)
- 충청 : 신규전입 제조업,
- 울산 : 근골격계질환
- 광주 : 하남공단, 대불공단

- ④ '09년도 대상선정 시 '08년도 관리 대상사업장 배제

4.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패키지 지원



< 지방관서 >

- 집중관리 대상 사업장 중 재해다발 사업주 특별교육 실시
 - 교육대상 : 최근 5년간 2회(연 단위)이상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(대리참석 불허)
 - 교육시기 : 집중관리대상 사업장 명단 확정 후 10일 이내
 - 교육내용 : 사업 배경 및 재해예방 필요성, 대상선정 사유, 향후 사업추진 방법 및 절차, 기술지원·재정지원·교육지원·검사지원 등 패키지 지원내용 등
 - 교육방법 : 지방관서장이 직접 정책방향 설명, 담당 감독관이 산안법상 사업주의무 및 처벌규정 소개, 안전공단 지도원 및 대행기관 직원이 지원내용 설명
- 교육 불참 사업주에 대해서는 담당 감독관이 1~2회 독려 후 불응시 당해연도 점검대상에 포함, 점검시 사업주 교육 실시

〈공단, 대행기관〉

- 사업장이 직접 위험성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재해 예방기법 기술지원(연 2-4회 기술지원)
 - 기술지원시 클린사업·용자 등 재정지원 세부절차 상세 안내
 - ※ 대행기관 직원에 대해서는 안전공단에서 클린사업·시설자금용자 등 재정지원 안내서 제공
- 기술 및 재정지원 완료 후 지적사항 미개선 사업장을 반드시 지방관서에 통보
 - * 사업장 지원 관리시스템에 의해 미개선 사업장 자동통보
- 사업장 지원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지원사업장 관리
 - 기술지원 후 해당 직원(대행기관 직원 포함)이 직접 관리 시스템에 기술·재정지원, 안전검사지원 등 결과 입력

□ 집중점검(지방관서)

- 안전공단 및 대행기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에 대하여 관할 관서 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집중점검 실시
 - 미 개선사항에 대하여 조치기준에 따라 행·사법처리
 - * 통합 D/B관리시스템에 의한 미개선사업장 자동통보(노동부 PKMS 연계)

5. 사후관리

- '08년도 기술지원사업장 중 10% 범위 내에서 재해발생사업장, 위험기계기구보유사업장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을 선정, 연 1회 방문확인

6. 사업추진 인프라 확충

- 기술 및 재정지원사업 성과 모니터링 강화
 - 외부 기관에 의뢰, 객관적 모니터링을 통해 실효성 평가
 - ※ 지방관서별 3대 다발재해/사고성 사망재해 발생현황 월별 분석 관리
- 안전문화 선진화 추진체제를 통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
 - 3대 다발재해 예방사업의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의견 수렴, 각종 행사 참여 등 재해추방 사회적 분위기 조성
- 노동부·공단·민간기관간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3대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방안에 대한 실무협의 활성화
 - 분기 1회 이상 실무회의 개최, 세부 사업추진 사항 협의·조정,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·개선방안 마련 등
- 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사업장별 이력관리
 - 기술지원, 클린사업, 안전검사 기술지원 이력관리와 재해건수, 지원전·후 재해감소율 통계관리 통합 D/B관리시스템 구축
 - 3대 다발재해 집중관리 사업관련 총괄관리 체계 구축
 - 각 기관별로 사업시행 과정에서 얻은 각종 안전보건정보(지적·조치·지원사항 등)를 집적, 공유
 - 통합 D/B관리시스템 구축 후 이력관리 시스템으로 이전·관리
- 감독관, 대행요원, 사업장 관리자 등 위험성평가 전문가 양성, 공단에 단기 집중양성과정 개설
- 3대 다발재해 및 사고성 사망재해 집중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무 협의회 구성·운영
 - 관내 안전공단·안전협회·보건협회 등 재해예방 민간기관을 총 망라한 협의회 구성·운영
 - 예방사업 성과평가, 사업추진 실적 점검, 재해현황 분석 등을 통하여 자체 예방대책 수립·추진 및 계획 수정·보완 등

2. 석면 해체·제거작업 인프라 구축 산업안전보건법개정

□ 배경 및 경과

- 그간 석면 해체·제거작업 작업수칙 규정은 있었으나, 조사 및 해체·제거업체의 자격기준 없어 안전작업의 인프라 부재
 - 해체·제거 건수가 급증, 지도감독만으로는 안전성 확보에 한계
 - ※ 허가건수 급증: '04 8건→'05 115건→'06 749건→'07 1,933건→'08 11,112건
- 석면 해체·제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이 '09.1.13(화) 국회 본회의 의결

□ 주요 내용

- 전문기관에 의한 석면조사제도 도입
 -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·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작업전에 일정한 인력·시설·장비를 갖춘 노동부장관 지정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, 함유량 등 조사
- 등록된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한 석면해체·제거
 - 건축물 등에 일정 기준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인력·시설·장비를 갖춘 노동부장관에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·제거업자를 통하여 석면 해체·제거
 - ※ 해체·제거작업 관리책임자·감독자는 석면교육 이수
- 작업후 공기중 석면농도 기준 준수
 - 석면해체·제거업자 공기 중 석면농도 0.01개/cc 이하 유지

□ 향후 계획

- 지정기준 등 하위법령 개정('09.8월초 시행예정)
 - 석면조사기관 및 해체·제거업체 등록에 대한 사전안내 및 교육을 통해 제도의 조기 정착
- 재개발 철거현장 등에 대한 불시점검 등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, 작업수칙을 위반하는 사례 근절

3. 석면 피해 근로자 보상 방안

□ 산재보상 요건

- 석면 피해 근로자 중 과거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일한 근로자는 현재 사업장이 없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음
 - 산재보험은 1964.7.1. 처음 도입 당시 광업 및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수 5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된 이후 확대되어 왔음

※ 산재보험 적용 사업장(광업 및 제조업)

사업체 규모	200인	150인	100인	50인	30인	16인	5인	1인(이상)
시행일	'65.1.1.	'66.1.1.	'67.1.1.	'68.1.1.	'72.1.1.	'73.1.1.	'76.1.1.	'00.7.1.

□ 산재보상 내용

-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석면 관련 직업병은 ① 석면폐증, ② 석면폐증, 늑막비후 등을 동반한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③ 석면폐증 등이 없어도 석면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 명백한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등
-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석면폐증 환자는 심폐기능의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급여를 받을 수 있음.
 - ※ 예)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99일분, 11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220일분, 9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385일분.
- 원발성 폐암 또는 악성 중피종 환자는 치료를 받을 수 있고, 치료 기간 중에는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음
- 석면 관련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
- 산재보상은 근로복지공단 지사(1588-0075)를 통해 지급
- 최근 석면 관련 직업병은 연간 10건 내외가 발생하였음

<참고자료>

<석면관련 직업병 발생 현황>

연도	합 계	석면폐증	원발성폐암	악성중피종
합계	56	7	24	25
2004	9	0	1	8
2005	10	1	6	3
2006	4	1	0	3
2007	18	3	10	5
2008	15	2	7	6